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한국·미국·일본 3국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등급 1명), 양자 수출통제·제재 및 유엔 비확산 제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등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932”를 “935”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97”을 “700”으로 하며, 7등급 외무공무원 “18”을 “19”로 하고,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5”를 “116”로 하며,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6”을 “15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42”를 “945”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7”을 “710”으로 하며, 7등급 외무공무원 “18”을 “19”로 하고,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5”를 “116”로 하며,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6”을 “15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89”를 “1,490”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89”를 “1,490”으로 하며,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48”을 “249”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외교부 본부 한시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총계	1
외무공무원 계	1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한시정원) <신설>	제39조(한시정원) ① <u>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932</u>		<u>935</u>	+3	
	.		.		.		
	.		.		.		
외무공무원	계		<u>697</u>		<u>700</u>	+3	
	.		.		.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8</u>		<u>19</u>	+1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u>115</u>		<u>116</u>	+1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u>156</u>		<u>157</u>	+1	
영사직공무원							
	.		.		.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42	945	+3
외무공무원 계	707	710	+3
7등급 외무공무원	18	19	+1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5	116	+1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6	157	+1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489</u>	<u>1,490</u>	+1
외무공무원 계			<u>1,489</u>	<u>1,490</u>	+1
3등급	.		.	.	
	.		.	.	
또는					
4등급			<u>248</u>	<u>249</u>	+1
영사직공무원					
	.		.	.	
	.		.	.	